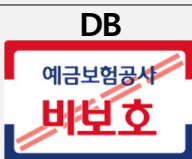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핵심설명서

1 기본정보

최고금리 (세금납부 전)	연 2.00% (디폴트옵션)	▶ 디폴트옵션: 3년제, '25.5.1. 기준, 세전 · 상세 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예금 가입 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확정금리 상품
상품유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금융기관)	
계약기간	3년	
가입금액	1원 이상	
분할해지	○	· 만기해지 포함 3회 · 분할지급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처리방법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단,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는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예금담보대출	불가 (퇴직연금제도 내 운용되는 상품)	
예금자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제한 등록 불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금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등 · 특별중도해지시 이자율 · (예)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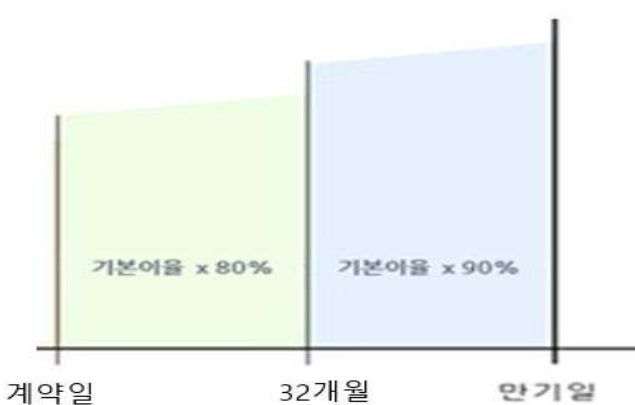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수령하시는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 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금융기관)
상품유형	· 퇴직연금 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 (퇴직연금 운용상품 지정 필요) ·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가입금액	· 1원 이상
계약기간	· 3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제한 등록 불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구 분	내 용								
적용이율 (세금납부 전, 연이율, %, 2025.05.01. 기준)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 <table border="1"> <tr> <th>계약기간</th><th>금리</th></tr> <tr> <td>3년</td><td>2.00</td></tr> </table> ※ 신규(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금리	3년	2.00				
계약기간	금리								
3년	2.00								
만기후이자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 적용 <table border="1"> <tr> <th>경과기간</th><th>적용이율</th></tr> <tr> <td>만기후 1개월 이내</td><td>만기시점 약정이율 X 50%</td></tr> <tr> <td>만기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td><td>만기시점 약정이율 X 30%</td></tr> <tr> <td>만기후 6개월 초과</td><td>만기시점 약정이율 X 20%</td></tr> </table>	경과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X 50%	만기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X 30%	만기후 6개월 초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X 20%
경과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X 50%								
만기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X 30%								
만기후 6개월 초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X 20%								
만기이자 산출근거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이자계산 산식] 예금가입금액 × 계약기간별 연 이율 × (계약일수 / 365일)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됨 ("만기앞당김 지급" 적용되지 않음) <table border="1"> <tr> <th>보유기간</th><th>이율</th></tr> <tr> <td>32개월 미만</td><td>약정이율 x 80%</td></tr> <tr> <td>32개월 이상</td><td>약정이율 x 90%</td></tr> </table> ※ 약정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보유기간	이율	3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80%	32개월 이상	약정이율 x 90%		
보유기간	이율								
3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80%								
32개월 이상	약정이율 x 90%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 계산방법(예시) 								

구 분	내 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9. 수수료의 징수 10.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 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한다.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이하 : 기간별 약정금리 - 2년 :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3년 : 2년 미만 예치 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예치 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5년 : 2년 미만 예치 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 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3년 이상 예치 시 3년제 일반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2년 미만 : 기간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6개월 미만은 3개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6개월, 9개월 이상 1년 미만은 9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3.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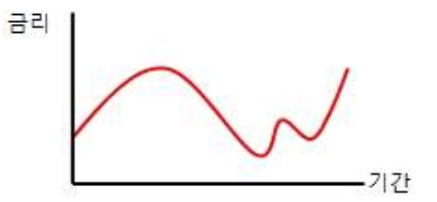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예금자보호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금융상품 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불가능	
만기처리방법	-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된다. -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 및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됩니다. -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 지급 (일부 지급)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의 경우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능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3 |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 형태		
특징	▶ 예금 가입 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장점	▶ 시장금리 하락기 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상승기 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
단점	▶ 시장금리 상승기 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